

소 장

원 고 홍 일 표

피 고 국세청장

소송물가액 금10,000,100원

인 지 대 금50,000원

송 달 료 금45,200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귀중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0
서정빌딩 4층

합동법률사무소 **길벗**
변호사 河昇秀 · 李相勳

TEL : (02) 587-9400
FAX : (02) 587-9373

소 장

원 고 홍 일 표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3 안국빌딩 3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하승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10 서정빌딩 4층
(전화번호 : 587-9400, 팩스 : 587-9373)

피 고 국세청장

서울 종로구 수송동 180의 4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9. 4. 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1997년, 1998년 국세청 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의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가. 원고는 시민단체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강제1호증(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1) "1996년, 1997년, 1998년 국세청 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의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2)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액수와 그 사용용도, 지출결의서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1999. 4. 6. 부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강제2호증 참조). 구체적으로, 피고는 "1996년, 1997년, 1998년 국세청 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의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공개 청구한 보존문서 기록대장은 비공개자료 문서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대상 문서목록만 별도로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에 관련된 정보만 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의의

(1) 원고가 피고에 대해 공개청구한 '보존문서 기록대장'은, 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1조에서 일반에 공개할 것을 예정한 문서들입니다. 즉 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일반 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문서목록...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법에서 주요문서목록 내지 보존문서기록대장의 공개를 강제한 이유는,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주요문서목록 내지 보존문서기록대장의 공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국민 으로서는 공공기관에 어떠한 문서가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기에, 주요문서목록 내지 보존문서기록대장을 참조하여야만 자신이 공개 청구할 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가 한강수질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그 자료

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 시민이 과연 자신이 이용하는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고자 위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려고 할 경우, 주요문서목록 내지 보존문서기록대장을 참조하여 정보를 특정한 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문서목록 내지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볼 수 없다면, 일반국민으로서 어떤 정보가 공공기관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므로 정보공개청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있는 것입니다.

나. 비공개사유에 대한 검토

(1) 피고는 원고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거부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유로 규정된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도대체 피고가 주장하는 위 법제7조 제1항의 다른 법률 내지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또한 피고는 비공개사유에 대한 부연설명으로써, “보존문서기록대장은 비공개자료 문서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대상 문서목록만 별도로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사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비공개자료 문서목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보존문서기록대장 자체의 비공개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존문서기록대장에 실려 있는 것은 문서의 제목정도에 불과하고, 비공개대상 문서 자체가 실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

다.

또한 공개대상 문서목록을 별도로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법에서는 공개대상 문서목록을 별도로 생산하여 관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개대상 문서목록을 별도로 생산하여 관리한다면, 그 목록에는 공공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목록에 실게 될 것이므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한 법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각 보존문서기록대장은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에서 당연히 공개를 예정한 것이기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갑제2호증 정보 부분 공개 결정서

기타의 입증방법은 변론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1. 소장부분 1통
- 1. 위 입증방법 각 1통
- 1. 위임장 1통

1999. 4. 15.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훈

변호사 하 승 수

서울행정법원 귀중